

『불산누출사고 피해자 구미시 재산세 감면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12년 9월 27일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4단지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체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불산 누출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, 주택,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
 - 축사 및 농업용 창고는 재산세를 면제하고, 공장용 건축물은 건축물 피해금액 만큼 감면(피해금액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제)
 - 주택 및 농지는 재산세 면제
 - 임야는 피해면적 만큼 재산세 감면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감면 예상액

(단위:백만원)

세 목	예상세액	산 출 근 거	비 고
재 산 세	222		
건축물	26	공장 59동, 축사 및 농업용 창고 33건	
주 택	33	272명 317동, 다가구 9동	
토 지	163	농지 943명 4,489건, 임야 75명 25필지	

※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조서 기준

○ 기 타 : 불산가스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시달(행정안전부)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2012년 9월 27일 구미시 산동면 국가산업4단지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체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 재산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불산 누출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, 주택,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2013년 재산세 감면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동의안은

불산누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체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산 누출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, 주택,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2013년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「지방자치법」 제 39조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

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불산누출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지방세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.